

2023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

1. 제안이유

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대표이사의 책임경영 이행과 금천일자리주식회사의 경영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추진근거

가.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

나.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, 제16조

3. 주요내용

가. 평가 대상 : 금천일자리주식회사

나. 평가 기간 : 2022. 1. 1.~2022. 12. 31.

다. 평가 내용

1) 금천일자리주식회사(2022년도 실적) 기관 경영평가

2) 금천일자리주식회사(2022년도 실적) 대표이사 성과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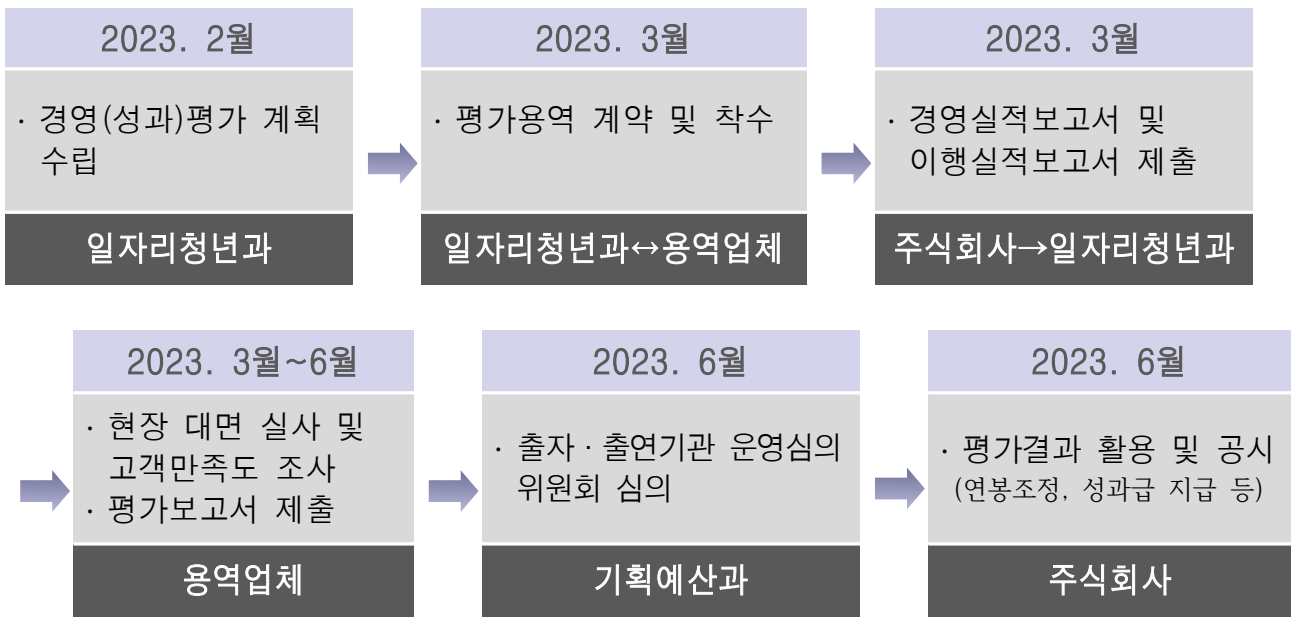
라. 평가 방법 : 외부 전문기관 용역(수의계약)

1) 용역기간 : 2023. 3월~6월(약 4개월)

2) 소요예산 : 14,000천원(구비)

마. 평가결과 활용 : 대표이사 연봉 인상률 및 성과급, 직원 성과급 결정

4. 추진일정표



5. 참고사항

가. 2023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지표(안) - [붙임1]

나. 2023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 성과평가 지표(안) - [붙임2]

다. 관계 법령 - [붙임3]

- 1)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, 제28조
- 2)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, 제16조

[붙임1]

금천일자리주식회사 「기관」 경영평가 지표(안)

경영평가 지표(안)

평가영역	평가부문	평가지표	배점	
			정성	정량
I. 지속가능 경영 (25점)	리더십 (12점)	1. 경영층의 리더십	6	
		2. 전략경영	4	2
	경영시스템 (13점)	1. 조직·인사관리	6	
		2. 재무관리	5	2
II. 경영성과 (45점)	주요사업 (5점)	기관 고유사업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정도	5	
	수익성 (8점)	사업수익목표 달성도		4
		자기자본이익률		4
	안정성 (8점)	금융부채비율		4
		이자보상비율		4
	생산성 (7점)	고용창출 성과목표 달성도		4
		1인당 당기순이익		3
	성장성 (7점)	매출액증가율		4
		영업이익증가율		3
	고객만족성과 (10점)	1. 고객만족도		10
III. 사회적 가치 (30점)	일자리확대 (10점)	1. 일자리 창출 및 일·가정 양립	10	
	사회적 책임 (20점)	1. 소통 및 참여	4	1
		2. 윤리경영	2	
		3. 인권경영	2	
		4. 재난·안전관리	4	1
		5. 지역상생발전	6	
합 계(100점)			54	46

※ 행정안전부 「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」을 기초로 작성한 자료이며, 용역 착수 후 우리구 정책 방향 및 사업 실정에 맞는 지표로 조정 예정

[붙임2]

금천일자리주식회사 「대표이사」 성과평가 지표(안)

단위목표	세부 평가지표	배 점
1. 책임경영 구현(10점)	① 책임경영 구현을 위한 이사의 리더십	5
	② 윤리경영 확립 및 투명성 제고	5
2. 고객만족 증진(10점)	①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	4
	② 고객 만족 증진을 위한 이사의 노력	3
	③ 민원발생 최소화	3
3. 경영수지 개선(10점)	① 영업매출 목표 달성도	5
	② 예산절감 목표 달성도	5
4. 사업관리(10점)	① 주요 사업 관리의 적절성	5
	② 신규사업 발굴 노력	5
5. 경영평가 결과(60점)	① 기관 경영평가 결과(점수환산)	60
총 점(100점)		100

관계법령

▣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11조(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장(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)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,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28조(경영실적의 평가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2.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
- ③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1.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
 2. 조직·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
 3. 전년도 결산서
 4. 최근 3년간 경영실적
 5. 제11조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
 6.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▣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0조(평가의 종류)

구청장은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.

1.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
2.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
3.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

제16조(평가의 활용)

- ① 구청장이 제10조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획과 결과 등을 구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구청장은 제10조 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·출연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.